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Ⅲ)

공동집필 · 김기령 변리사 킹로드특허법률사무소
나경수 이사 ESAK

〈목 차〉

1. 서론
2. 발전과 특징
3. 미국 민·소송의 현황과 특징
4. 개선과 개혁
5. 통일 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6. 개정

4. 개선과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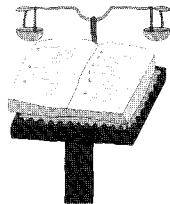
판례가 발전시킨 엄격책임의 법리는 소비자측 면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만 미국사회에 새로운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1960년 이후 제조물책임소송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로 인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앙등이 일어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인수가 혼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위기

(Product Liability Crisis)와, 또한 1980년부터는 제조물책임보험을 주로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위기(Insurance Crisis)가 미국 사회전체에 확산되면서 심각하고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기업의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엄격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와 주정부차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도 계속하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왔던 엄격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연대책임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변호사보수의 제한 등과 같은 고액배상의 현상을 가져온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연방정부의 개혁

엘 고어(Al Gore)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이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제도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는 50항목이나 되는 [민사재판제도 개혁 제안]을 1991년 8월에 공표하였다.

개혁의 주된 것은 ①공관전의 증거개시요구의 제한 ②징벌적 배상금의 상한 설정 ③폐소자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원칙의 제한 ④전문가 증인의 적정한 활용 ⑤조정이나 중재 등의 소송외적인 해결방법(ADR)의 활용 등이다. 그러나 무과실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제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해야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의 위기상황의 대처 방안으로 연방차원과 각 주차원에서 법적용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과 불법행위법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작되었다.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법(Model법)에 의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에 의한 대응이다.

(1)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UPLA)의 제정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1976년 4월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각부 합동조사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를 설치하고 제조물책임문제의 조사 및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합동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상무부는 1979년 10월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UPLA : 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을 정식으로 공표하였다. MUPLA의 입법취지는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각주의 제조물책임법의 통일

이 필요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물의 이용자와 판매자의 공평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MUPLA는 상무부가 연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의도에서 만든 연방법률이 아니라 각주가 제정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는 일종의 모델법(Model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연방헌법 1조 8항의 통상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주가 이 문제를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연방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규제에는 주정부로부터의 강경한 저항이 예상되었던 것도 연방법이 아닌 모델법의 형식을 취한 이유이다.

MUPLA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나, 연방행정부는 각주에서 이 법에 따라 주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각주의 제조물책임원칙의 통일을 이루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MUPLA는 산업계와 소비자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또한 이들의 합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배경 때문에 극히 소수의 주에서 일부의 조항을 채택하는 입법을 하는데 그침으로써, 법 제정 이후에도 미국전역에 걸친 제조물책임법의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1984년 기준으로 코네티컷주, 아이아호주, 캔사스주, 워싱턴 등 4개주만이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을 채용하고 있다.

MUPLA는 제조물의 이용자와 판매자 쌍방의 이익의 공평한 균형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혼란과 불확실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MUPLA는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



부당하게 불안전한 결함'(Unreasonably Unsafe Defect)을 4종으로 나누어 각 결함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즉 (i) 제조상의 결함(Constructive Defects)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ii)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iii) 지시·경고상의 결함(Duty to Warn)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iv)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결함판단기준으로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표준일탈기준,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위험효용형량기준에 의하고 있다.

주요면책사유로는 (i) 제조물상의 불가피한 결함(Unavoidably Unsafe Defect), (ii) 기술수준(State of Art), (iii) 10년의 유효안전 기간(Useful Safe Life)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 (iv)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v) 정부와 체결한 계약조항 중에 특정양식에 합치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다. 또 그에 따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Compliance With Mandatory Government Contract Specification), (vi) 2년의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경과 등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경우로서는 (i)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25,000달라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2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한다. (ii) 공공적 원천 즉 일반세수로부터 기금의 절반이상이 조달된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제외한다. 이것이 이른바 Collateral Source Rule의 수정 사항이다. (iii)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加害자가 무모하게 안

전성을 무시하였음을 명백하고도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측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비경제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여 배상액의 고액화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2)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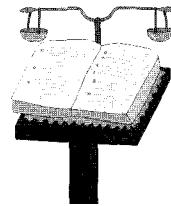
연방의회에 의한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는 MUPLA에 의한 제조물책임원칙의 통일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조물책임법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방의회에 제안된 일련의 연방제조물책임법안은 MUPLA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연방입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도 MUPLA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Kasten법안, 상원상무위원회법안, Richardson법안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회의 휴회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어느 것 하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대부분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의회에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제조물책임법 개편방향을 의회에서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조물책임의 위기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 것이 상식제조물책임개혁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and Legal Reform Act of 1995 : H.R.956)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통합하여 의회에서 1996년 5월



에 통과시킨 것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우선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실제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소송이 많다.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소송진행은 완만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매우 비싼 소송비용은 국가 경제에 불필요하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나아가 지나친 사법체계의 비용은 미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그리고 국가경제에 있어서 생산자금을 감소시킨다.

둘째, 지나치고, 예측할 수 없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은 직접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주와 주간의 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제조물책임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분담을 다루는 판결들은 일관성이 없이 주내 혹은 주간에 복잡하고 모순되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공평하지 못한 불확실함을 야기시킨다. 더구나 주상업에는 고르지 못한 부담을 야기시키며 전개되어 왔다.

넷째, 지나치고, 불확실하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의 결과로 소비자들은 반대로 시장으로부터 제조물,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공급자의 쇠퇴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친 책임비용은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지나치고, 불확실하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은 전체 산업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의 복지도 위협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와 납세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불확실한 손해배상금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뢰감과 적정한 비용으로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게 하여 높은 책임보험비용을 추가하게 한다.

여섯째, 사법체계의 결점으로 생긴 국가적인 문제들의 범위 때문에 주들이 그런 문제들에 적절히 반응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불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주간의 상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과 권리를 가지는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여덟째, 지나치고, 변덕스런, 불확실한 손해배상에 반해, 비용과 소송지연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법체계에 대한 합리성, 확실성 그리고 공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상품과 서비스에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시키고 주 상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송절차권을 증진시키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입법한다고 못박고 있다.

첫째, 제조물 사용자, 제조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간에 공평한 균형을 제공하는 확실하고 통합적인 법적 원칙을 확립한다.

둘째, 소송청구자가 고통을 당한 실제적인 손해 이상으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둔다.

셋째,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평한 책임을 나눈다.

넷째,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로운 지나친 소송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청난 비용과 지연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사법체계에 있어서 보다 더 공평성, 합리성, 예측가능성을 확립한다.

1996년의 이러한 법안 내용을 볼 때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단순한 법내용으로 인한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만으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될 우려도 있다.

2) 주 차원의 불법행위법 개혁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책임법개혁과 병행하여 각 주에 있어서도 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물론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주법(州法)으로 규정하여야 할 분야이며, 연방정부의 관할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주차원에서는 제2차 보험위기가 있은 다음 1986년 1월 이후 45개 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왔다.

그 내용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비경제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②배상금 중복청구(Collateral Source Rule)의 제한 ③변호사 성공보수제도의 제한 ④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제한 ⑤근거가 박약한 소송의 제한 ⑥정기분할 지급제도의 도입 ⑦연대책임법리의 제한 ⑧재판 외 분쟁처리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5.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판례를 집대성하여 재판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리스트레이트먼트는 1965년에 제정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제402조 A와 B는 그 동안 대부분의 주에서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에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새로운 리스트레이트먼트의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997년 12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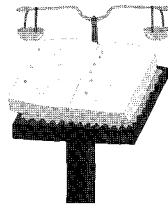
스테이트먼트가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4개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 제1조에서는 책임원칙을, 제2조에서는 결함의 종류 및 유무를, 제3조와 4조에서는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6조, 7조에서는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으로, 구성부품, 원재료나 반제품의 제조자,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자, 식품이나 중고품의 제조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판매한 때 이외의 시점, 즉 판매 전 또는 판매 후에 생긴 결함에 관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않거나 제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조자의 사업 승계자와 외견상 제조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와 13조는 피승계 사업자의 제품에 대하여 사업 승계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와 피승계 사업자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위험에 대하여 판매 후에 경고하지 않은 사업 승계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제품에 자기상호를 부착하고 있지만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 외견상의 제조자는 실제의 제조자와 동일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반적인 적용규정으로서 인과관계, 적극적 항변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배상책임의 요건중의 하나인 인과



관계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과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대충돌 안전성 또는 증대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와 18조는 책임의 분배와 계약상 면책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제조물책임의 배상청구를 방해 내지 감액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 제19조, 20조, 21조에서는 “제조물” “판매 또는 공급한 자” 및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6. 결론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판례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통일상법전이라는 제정법에 의한 보증책임의 양축으로 하여 결합 제조물에 대한 피해자 구제의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법의 운용과 함께 절차법으로서 다른 대륙 법과는 특이한 소송제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PL소송의 남발,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액, 수없이 많은 사소한 예상밖의 자디잔 소송사건들, 고액에 대한 정기적 분할배상, 집단소송 등 여타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법리의 적용은 미국의 사회에서 특정한 산업이 무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일종의 국민들의 일치된 사회여건을 형성하여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

의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과잉보호라는 중심에서 조정내지 재정비하고자 하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특수법리가 그런데로 그나마 미국에서 정착된 것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꽂피었고,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정돈된 사회분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정착된데다가 초현대적인 유통체계의 확립,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형성 그리고 다수의 변호사 등이 작용하여 소비자천국을 일구어낸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정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초중심의 지상낙원을 만든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이 동전과 같이 양면이 있듯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라는 측면이외에 기업활동에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최근에는 주(州)별로 다양한 보완장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그동안 값비싼 교훈을 통해 통렬한 경험을 맛본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토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를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보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향후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미국내에서의 추이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